

(보령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해상교통안전법」 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양레저 활동 허가필요수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니 아래 고시된 수역 내에서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윈드서핑 등 해양레저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보령해양경찰서장에게 허가를 받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1일

보령해양경찰서장

1.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순번	항만명	소재지	고시구역
1	보령항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다음 각 호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의 내측 수역(보령항) 가. 면화박골 서단 북위 36도 27분 14초 동경 126도 29분 12초 나. 월도 동단 북위 36도 24분 36초 동경 126도 28분 10초 다. 원산도 도투머리 산정 북위 36도 19분 08초 동경 126도 26분 51초 라. 보령시 신흥동 서단 북위 36도 19분 28.57초 동경 126도 30분 03초 마. 송도 서단 북위 36도 23분 07초 동경 126도 28분 45초 바. 오천국교 서단 북위 36도 26분 17초 동경 126도 31분 00초 사. 혜독동 동단 북위 36도 26분 24초 동경 126도 30분 44초
2	홍원항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도둔리	다음 각 호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의 내측 수역(홍원항) 가. 서방파제 끝단(북위 36도 09분 41.3초 동경 126도 30분 12.5초) 나. 북위 36도 09분 45초 동경 126도 30분 12.5초 다. 북위 36도 09분 45초 동경 126도 30분 20초 라. 동방파제(북위 36도 09분 40초 동경 126도 30분 20초)

순번	항만명	소재지	고시구역
3	장항항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신창리	다음 각 호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의 내측 수역(장항항) 가. 북위 36도 00분 33초 동경 126도 39분 47초 나. 북위 36도 00분 33초 동경 126도 35분 00초 다. 북위 35도 59분 26초 동경 126도 35분 00초 라. 북위 35도 59분 26초 동경 126도 39분 27초 마. 북위 36도 00분 03초 동경 126도 40분 03초 바. 북위 36도 00분 03초 동경 126도 43분 24초 사. 북위 36도 01분 00초 동경 126도 44분 45초
4	마량진항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마량리	다음 각 호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의 내측 수역(마량진항) 가. 서방파제 끝단(북위 36도 08분 01초 동경 126도 30분 23초) 나. 북위 36도 08분 01초 동경 126도 30분 47초 다. 북위 36도 07분 36초 동경 126도 30분 47초 라. 북위 36도 07분 36초 동경 126도 29분 39.5초 마. 북위 36도 08분 01초 동경 126도 29분 39.5초

2. 문의처 : 보령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041-402-2359)
3. 참고사항 : 상기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내에서 허가 없이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의 행위를 하거나 허가할 때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재검토기한 : 보령해양경찰서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 보령해양경찰서 고시 제2023-1호는 폐지한다.